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3255
-----------	------

2022년 6월 15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5월 25일, 문영민 의원
2. 회부일자 : 2022년 5월 27일
3. 상정일자

-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6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영민 의원)

1. 제안이유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대상)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법령과 달리 ‘저소득층 등’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조례에 명시된 ‘저소득층’에만 한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외의 취약계층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조례에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정의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여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원격교육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4호).
- 현행 조항에서 규정하는 ‘장애학생’을 삭제하고 이를 ‘취약계층 학생’에 포함(안 제10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2년 5월 25일 문영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255호로 발의되어 2022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원격수업 지원에 있어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정부는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올해 3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¹⁾
- 동 시행령에는 원격교육 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원격교육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처리 근거 등이 규정됨과 동시에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의되었습니다.
- 시행령 제2조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4조 제2항²⁾에 근거하여 지원해야 하는 학생의 범위를 특수교육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등 7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³⁾

연번	지원 대상	세부 사항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자녀 등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읍·면 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 학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학생으로서 원격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3.25., 대통령령 제32555호, 2022.3.25., 제정)

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정리한 것임.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와 같이 제시된 상위법령상 취약계층 정의를 조례에 적용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원대책의 우선순위를 명료하게 설정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라는 차원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나. 안 제2조제4호 신설 및 제10조에 대한 검토

- 한편 조례 제10조는 교육감이 원격수업의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배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문의 의미를 보완하기 위해 제2조제4호에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생”으로 정의하고, 안 제10조는 “교육감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적극 배려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현행 조례가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조문의 취지와 합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3월 발표한 「2020학년도 초·중등 원격수업 운영 지침」에서 규정된 공정성·형평성 확보를 위한 취약계층 관련 사항과⁴⁾ ‘인공지능(AI) 튜터 마중물학교’ 시행에 있어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⁵⁾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의

4)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 원격수업 운영 지침(2020.3.31. 제정, 2020.4.6. 시행,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5쪽.

※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 원격수업 운영 지침」(2020.3.31. 제정, 2020.4.6. 시행,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도 동일함.

6 유의사항

- (공정성·형평성) 학교는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 다문화 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5) 동 사업은 크게 ① 다문화·탈북학생 학습·정서·심리 분석 및 상담 지원, ② 난독·난산·경계선 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667, 2022.6.3.).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제10조의 제목 “(장애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장애 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10조(<u>장애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u>) 교육감은 <u>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u>을 적극 배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u>”이란 「<u>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u>」 제2조에 따른 <u>학생</u>을 말한다.</p> <p>제10조(<u>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u>) ----- <u>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u>----- ----- -----.</p>